

소장

원고 김민수, (800819 - 1075420, 010-5229-7595, humai@naver.com)
경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397, 314동 506호

청구취지

-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11월 07일부터 2024년 11월 08일까지는 연 10%의,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구원인

1. 당사자의 관례

가. 원고는 지인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고, 그의 요청으로 2024년 11월 07일, 피고에 대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.

나.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대여금 100,000을 지급 받았으나 현재까지 이를 갚지 않고 있어서 위 대여금의 원금,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채무를 지는 자입니다.

2. 대여금 반환 등 청구권의 발생

가.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금전 소비대차 계약 계약(대여금: 100,000원, 이자: 연 %)을 체결(이하 '본 건 계약'이라고 합니다)하였고, 이에 따라 {{ #answer_1_877 }}피고가 알려준 계좌로 100,000원을 대여(이하 '이 사건 대여금'이라고 합니다)하였습니다.

나. 피고는 본 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자(지연이자)를 변제하였어야 하나, 현재까지도 이를 전혀 갚지 않고 있습니다.

다. 따라서,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100,000원 및 이에 대한 대여시기인 2024년 11월 07일부터 변제기인 2024년 11월 08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.

3. 결론

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본 건 청구를 모두 인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
증거서류

서식입니다. (11)

서식입니다. (9)

서식입니다. (3)

2024년 11월 07일

수원지방법원 귀중